A2
Session

한일간 국가물류 정책에 관한 비교분석

김일동 박사(가나가와대학) · 박찬익연구원(한진연구원)

한일간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비교분석

-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신종합물류시책대강을 중심으로 -

발표의 구성

Ⅰ. 한일간 물류의 발전과정

Ⅱ. 한국의 국가물류정책
- **1. 화물유통촉진법** -- 제정되기까지의 흐름
- **2. 국가물류기본계획** -- 4가지 국가물류기본계획

Ⅲ. 일본의 국가물류정책
- **1. 종합물류시책대강** -- 골자, 평가
- **2. 신종합물류시책대강** -- 골자

Ⅳ. 결론
- **1. 비교 (형식면, 내용면)**
- **2. 금후의 과제**

Ⅰ. 한일간 물류의 발전과정

한일간 물류의 발전과정

❑ 물류용어의 정착과 로지스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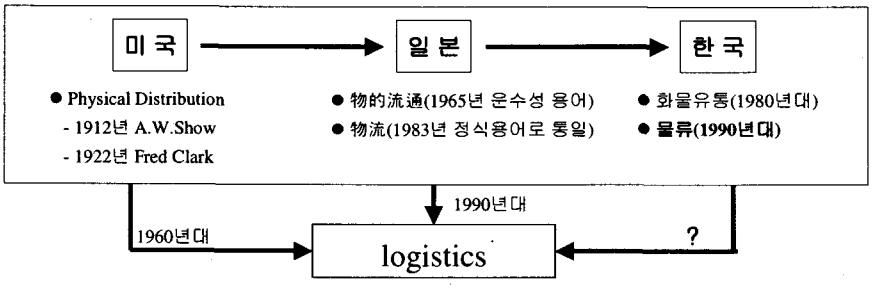

◆ 현재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류」라는 용어가 한국에서 그대로 사용 중에 있음

※ 연구자 또는 정부 및 기업이 그 실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개념을 자연스럽게 도입하여 사용한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되어 짐

한일간 물류의 발전과정

❑ 일본의 발전 과정(협회 및 학회)

협회

- 1970년, 일본물적유통협회 발족
- 1971년, 일본물류관리협의회 발족

통합

- 1992년 6월 10일, 통상산업성과 운수성의 공동관리
  사단법인 일본 로지스틱스 시스템 협회

학회

- 1983년 6월, **일본 물류 학회** 설립
- 1998년 6월 6일, **일본 로지스틱스 시스템 학회** 설립

한일간 물류의 발전과정

❑ 일본의 발전 과정(물류정책의 전개)

일본의 물류정책의 전개는 6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됨

60년대 이전	60년대 이후
■ "물류"라고 하는 말 조차 존재하지 않음 ■ 물류의 제활동은 개별적으로 교통·및 산업정책 속에 스며들어 있었음	■ 운수성—운수 및 교통정책 속의 물류정책 ■ 통산성—유통정책 중의 물류정책

※목표가 되어야 할 물류전체의 체계가 인식되어지지 않음

한일간 물류의 발전과정

❑ 일본의 발전 과정(물류정책의 전개)

1997년 4월 4일, 정부의 종합물류시책대강 발표

"물류체계"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물류네트워크 또는
유통 전체에 있어서의 물류의 체계화의 본연의 모습을 이해하게 됨

※ 효과적인 물류체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님!

※ 전체적인 물류로의 어프로치가 이루어지려고 한다는 의미

한일간 물류의 발전과정

❑ 한국의 물류 태동기(1970년대 중반)

1975년경	"대우중공업"과 "한국중공업" → 포크리프트 생산에 의한 팔레트와 관련된 운반 및 하역작업의 연구
1980년대초	"태평양화학(주)", "동아제약(주)", "한국타이어(주)" 등 → 상품유통본부, 물류과 신설

한일간 물류의 발전과정

❑ 한국의 발전 과정

협회	● 1984. 9. 1. 한국물류관리연구원 설립
	● 1990. 2. 14. (사)한국물류관리협의회 발족 (경제기획원 인가)
	● 1994년, 건교부 내 물류정책과, 물류시설과, 화물운송과 신설 (**물류심의관**이 총괄)
	● 1995. 9. 26. (사)한국물류협회로 개명 (건설교통부 허가)
학회	● 1991년 : 한국물류학회 발족
	● 1992년 :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발족
법률	● 1991. 12. 14, 화물유통촉진법 제정·공포

Ⅱ. 한국의 국가물류정책

화물유통촉진법

❑ 화물유통촉진법 제정 경위

1991. 10. 21	제156회 국회 정부(교통부) 화물유통촉진법안 제안	
1991. 11. 19	제156회 국회 제11차 교통체신위원회 회의 수정가결	
1991. 11. 20	제156회 국회 제14차 본회의 의결	
1991. 12. 14	화물유통촉진법 공포(법률 제4433호)	시행 : 1992. 6.14
1992. 6. 11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13661호)	시행 : 1992. 6.15
1992. 7. 11	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 제정(교통부령 제979호)	시행 : 1992. 7.11

화물유통촉진법

❑ 화물유통촉진법 개정 경위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
제정 1991.12.14 법률제4433호	제정 1992.06.11(대통령령 제13661호)	제정 1992.07.11(교통부령 제979호)
일부개정 1993. 03.10(법률제4546호)	일부개정 1993.03.06(대통령령 제13870호)	일부개정 1996.07.27(건설교통부령 제73호)
일부개정 1993. 08.05(법률제4577호)	일부개정 1993.07.26(대통령령 제13939호)	일부개정 1999.02.09(건설교통부령 제168호)
일부개정 1995.12.29(법률제5092호)	일부개정 1994.12.23(대통령령 제14438호)	일부개정 1999.05.29(건설교통부령 제193호)
일부개정 1995.12.29(법률제5110호)	일부개정 1994.12.23(대통령령 제14447호)	일부개정 2000.08.08(건설교통부령 제254호)
일부개정 1996.08.14(법률제5160호)	일부개정 1996.06.29(대통령령 제15095호)	
일부개정 1997.12.13(법률제5453호)	일부개정 1996.08.08(대통령령 제15135호)	
일부개정 1997.12.13(법률제5454호)	일부개정 1997.12.31(대통령령 제15598호)	
일부개정 1999.02.05(법률제5801호)	일부개정 1998.12.31(대통령령 제16068호)	
일부개정 1999.02.08(법률제5835호)	일부개정 1999.01.29(대통령령 제16093호)	
일부개정 1999.02.08(법률제5893호)	일부개정 1999.05.10(대통령령 제16299호)	
일부개정 1999.02.08(법률제5911호)	일부개정 2000.07.27(대통령령 제16927호)	
일부개정 1999.02.08(법률제5914호)		
일부개정 2000.01.28(법률제6239호)		
일부개정 2000.12.29(법률제6305호)		
일부개정 2002.02.04(법률제6655호)		
일부개정 2002.02.04(법률제6656호)		

화물유통촉진법

❑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의무조항 및 개정

명칭	화물유통기본계획 (91.12.14)	국가물류기본계획 (00. 1.28)
계획수립단위	10년 (91.12.14)	20년 (00. 1.28)
기본계획의 검토		5년마다 타당성 여부 검토, 기본계획에 반영 (00. 1.28 본 조항 신설)
시행계획의 수립	년도별 시행계획수립, 공고 (91.12.14)	년도별 시행계획수립, 관계행정기관에 통보 (95.12.29)

화물유통촉진법

❑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의무조항 및 개정

기본계획내용	(91.12.14)	1. 화물유통량의 추정 및 물류시설의 확보·지원 2. 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정비 3. 물류표준화 4. 화물유통을 위한 전산망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 5. 화물유통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기타 화물유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5.12.29)	1. 물류수요의 추정 및 물류시설의 확보·지원 **2.물류시설 등의 집단화에 관한 사항** 3. 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정비 4. 물류표준화 5. 화물유통을 위한 전산망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 6. 화물유통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기타 화물유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00.1.28)	**1.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물류시설의 수요예측 **3. 국가물류체계의 개선목표와 단계별 추진계획** 4. 물류시설 등의 집단화에 관한 사항 5. 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정비 6. 물류표준화 7. 물류에 관한 정보통신망의 개발 · 보급 및 이용의 촉진 **8.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 · 육성** 9. 물류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기타 물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화물유통촉진법

❑ 도시물류기본계획 수립에 개한 의무조항 신설

법적 근거 (00.1.28 개정법)	특별시장 또는 광영시장은 관할구역의 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10년을 단위로 하는 **도시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법제4조의4)
기본계획내용	1. 도시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도시물류시설의 수요예측 3. 도시물류체계의 개선목표와 단계별 추진계획 4. 기타 도시물류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화물유통촉진법

❑ 화물유통촉진법의 개정

◆ 1991. 12. 14. **법률 제4433호 화물유통촉진법** 공포

↓

- 1994. 7. 30. 화물유통체제개선기본계획 – **교통부 공고 1994-44호**
- 1995. 7. 화물유통체제개선기본계획(1994~2003) – **제1차 수정**

◆ 1995. 12. 29. **법률 제5110호 화물유통촉진법** 공포

↓

- 1998. 12. 31. 국가물류기본계획(1994~2003) – **제2차 수정**

◆ 1999. 1. 6. **법률 제5801호 화물유통촉진법** 공포

↓

◆ 2000. 1. 28. **법률 제6239호 화물유통촉진법** 공포

- 2001. 1. **국가물류기본계획(2001~2020)**

4가지 국가물류기본계획

❑ 교통개발연구원의 수탁연구

◆ 1993. **화물유통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

- 1994. 7. 30. 화물유통체제개선기본계획 - **교통부 공고 1994-44호**
- 1995. 7. 화물유통체제개선기본계획(1994~2003) - **제1차 수정**

◆ 1997. 7. ~ 1998. 8. **물류체계개선방안**

↓

- 1998. 12. 31. 국가물류기본계획(1994~2003) - **제2차 수정**

◆ 1999. 4. ~ 2000. 4. **21세기 국가물류정책의 비젼과 전략**

- 2001. 1. **국가물류기본계획(2001~2020)**

4가지 국가물류기본계획

❑ 화물유통촉진법과 계획의 명칭

	화물유통촉진법	교통개발연구원	교통부 ⇒건설교통부
1991.12.14.	**화물유통기본계획**		
1993.		**화물유통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1994. 7.30.			**화물유통체제개선기본계획**
1995. 7.			**화물유통체제개선기본계획 (1994~2003)**
1997. 7.~ 1998. 8.		물류체계개선방안	
1998.12.31.			**국가물류기본계획(1994~2003)**
1999. 4.~ 2000. 4.		21세기 국가물류정책의 비젼과 전략	
2000. 1.28.	**국가물류기본계획**		
2001. 1.			**국가물류기본계획(2001~2020)**

화물유통 체제개선 기본계획

Ⅰ. 계획기간 및 목표

1. 계획기간 : 1994~2003년 (10년, 중간목표 : 1997년)

※ "신경제"5개년계획과 연계 추진 (1997년까지)

2. 계획목표

- 신속, 저렴, 편리, 안전한 화물유통서비스 제공

※ 수송, 보관, 하역 등 일관화물유통체제 구축에 역점

3. 전략목표

① 고도산업사회에 대응하는 선진 화물유통체제 구축

②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지원형 화물유통서비스 제공

③ 국제화물 유통기지로서의 기능 및 역할 강화

화물유통 체제개선 기본계획

Ⅱ. 주요정책방향

1. 기본방향

①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화물유통 기반시설의 대대적 확충

② 기존 화물시설 최대활용을 위한 제도 및 운영 개선

③ 국제화물 유통 중심지로서의 역할 강화

2. 추진과제

① 거점수송시설 확충

② 화물수송망 구축

③ 수송구조의 합리적 개편

④ 기존 화물유통시설의 최대활용

⑤ 보관시설의 재정비

⑥ 물류표준화, 하역기계화 추진

⑦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⑧ 화물유통 관련 제도 및 절차의 개선

⑨ 국제화물 유통 중심지 역할 강화

⑩ 물류기술 혁신

⑪ 전문인력 양성 및 행정지원 강화

국가물류기본계획

Ⅰ. 계획기간 및 목표

1. 계획기간 : 2001 ~ 2020년 (20년)

2. 계획의 성격

① 효과적인 국가물류체계의 구축을 위한 20년 단위의 국가계획

②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물류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공동목표 설정과 유관기관간 역할분담방안을 종합조정하기 위한 장기계획

3. 계획의 구성

① 20년 단위의 장기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 물류의 미래상과 정책추진방향 제시

② 5년 단위의 중기계획 "중기국가물류기본계획" – 구체적 실천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Ⅱ. 5대 목표

1. 물류강국을 지향하는 물류 간선네트워크의 구축
2. 물류부문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유기적 조화를 위한 물류기술의 고도화
3. 물류산업의 체질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4.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환경친화형 물류환경의 조성
5. 세계를 지향하는 국제 물류네트워크의 구축

Ⅲ. 일본의 국가물류정책

종합물류시책대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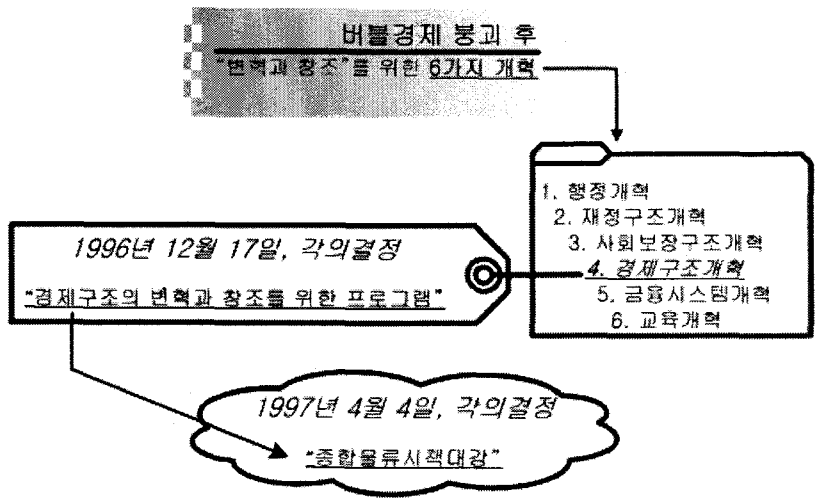

종합물류시책대강

신종합물류시책대강까지의 흐름 - ①

◆ 1997. 4. 4. 종합물류시책대강 각의결정

↓ ·····➤ 1997. 4. 9. JILS 좌담회
"태동하는 일본 물류의 사회시스템화—종합물류시책대강을 중심으로"

◆ 1998. 6. 11. "종합물류시책대강" 제1회 follow-up

↓

◆ 1999. 4. 27. "종합물류시책대강" 제2회 follow-up

↓

◆ 2000. 4. 24. "종합물류시책대강" 제3회 follow-up

↓

종합물류시책대강

신종합물류시책대강까지의 흐름 - ②

↓

◆ 2000. 12. 1. "경제구조의 변혁과 창조를 위한 행동계획"
(제3회 follow-up) 각의결정

↓

◆ 2001. 5. 29. ~ 6. 6. 신종합물류시책대강 책정을 위한
Public Comment 모집

↓

◆ 2001. 6. 18. 신종합물류시책대강 책정을 위한
Public Comment 결과 공표

↓

◆ 2001. 7. 6. 신종합물류시책대강 각의결정

종합물류시책대강

Ⅰ. 기본적인 목표

◆ 3가지의 기본적인 목표(**2001년까지**)를 결정

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편의성이 높은** 매력적인 서비스

② 산업입지 경쟁력의 **장해요인**이 되지 않는 **물류코스트**

③ **환경부하**의 경감

◆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시책의 3원칙을 결정

① **상호연계**에 의한 **종합적인 대처**

② **이용자의 다양성**에 대응 (**Multi-Modal 시책**)

③ **경쟁촉진**에 의한 **시장의 활성화**

종합물류시책대강

Ⅱ. 횡단적 시책

1. 사회자본정비

① 이용자의 needs에 대응하는 다양한 선택지(**사회자본의 상호연계**)

② **Bottleneck**의 해소

③ **국제Hub항만, Hub공항**의 정비

2. 규제완화 – 수급조정의 폐지, 안전규제

3. 물류시스템의 고도화 – 정보화, 표준화, 기타(기술개발, 상관행 개선)

종합물류시책대강

III. 분야별 시책

1. 도시내 물류

정체완화 및 화물자동차의 적재효율의 개선을 하여 물류서비스의 품질을 향상, **환경부하를 삭감**

2. 지역간 물류

Multi-Modal 시책을 통해 육해공 수송기관간의 경쟁조건을 정비하고, 복합일관수송의 실현과 **환경부하의 삭감을 지향**

3. 국제 물류

근년의 수입증가에 대응하여, 국제물류에 걸리는 시간 및 코스트를 줄이고, 내외가격차의 정정 및 **산업입지 경쟁력의 개선에 기여**

종합물류시책대강

IV. 각省 연계에 의한 정책추진체제의 구축

물류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해 갈 필요성 위에 **관계관청, 지방공공단체, 물류사업자, 하주가 연계해서** 시책이나 대처를 전개해 나가기 위해 **중앙 및 지방의 쌍방에서 연계를 도모한다.**

1. 중앙에서의 관계 省・廳의 연계

2. 지방에서의 연계

3. 실시상황에 따라 매년 follow-up을 실시

종합물류시책대강

1997. 4. 9. JILS 좌담회

"대등하는 우리나라 물류의 사회시스템화—종합물류시책대강을 중심으로"

◆ 中田信哉(Shinya Nakada)씨의 평가

① 시기적절한 결정 : "물류행정의 일원화"

② 목표년도(2001년) : 목표년도 내의 실현은 불가능

③ 내용 그 자체 : 대강이 의도하는 사상 또는 concept가 결여

종합물류시책대강

1998. 6. 11. "종합물류시책대강" 제1회 follow-up

◆ http://www.mlit.go.jp/road/press/press0/06~11.htm

① 대강의 모든 시책항목에 걸친 물류시책의 진전이나 구체화가 보였으나, 물류효율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처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② 대강의 실현을 위해서는 관계 성(省)·청(廳)의 연계하에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물류시책대강

1999. 4. 27. "종합물류시책대강" 제2회 follow-up

◆ http://www.mlit.go.jp/road/press/press0/990427.html

- 사회자본 투자의 중점화 및 연계의 강화, 한층 높은 규제완화, 물류시스템의 정보화 등의 물류시책의 진전이 명확해 졌다.

종합물류시책대강

2000. 4. 24. "종합물류시책대강" 제3회 follow-up

◆ http://www.meti.go.jp/kohosys/press/0000586/0/follow.htm

- 각 분야에 있어서 물류시책의 보다 큰 진전이 명확해 졌다.

- 1년후의 목표달성 기한 도래후에도 계속해서 관계 省・廳 등이 연계하여, 새로운 문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종합물류시책대강의 수정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종합물류시책대강

Ⅰ. 목표와 시점

◆ 목표(2005년까지)

① 코스트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수준의 물류시장의 구축

② 환경부하를 저감시키는 물류체계의 구축과 순환형 사회에의 공헌

◆ 시책추진의 시점

① 각 주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 (정부와 민간,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② 공정하고도 경쟁적인 물류 서비스시장의 구축

③ 물류 인프라의 중점적·효율적인 정비와 기존 인프라의 유효활용

신종합물류시책대강

Ⅱ. 시책의 방향성

1. 국제경쟁력이 있는 사회 실현을 위한 고도의 전체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의 구축

① 고도의 전체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의 구축

② 국제물류거점의 기능강화 등

2. 사회적 과제에 대응한 물류시스템의 구축

① 지구온난화 문제에의 대응

②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에의 대응

③ 순환형(循環型) 사회실현을 위한 정맥물류시스템의 구축

④ 사고방지 등 물류의 안전문제에의 대응

3. 국민생활을 뒷받침하는 물류시스템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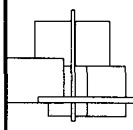

Ⅳ. 결론

결론

❑ 형식면에서의 비교

명칭	한국 (국가물류기본계획)	일본 (신종합물류시책대강)
계획의 성격	법률에 근거	단순한 물류시책에 관한 대강 (outline)
계획의 구성	장기계획(20년)과 중기계획(5년) 도시물류기본계획	목표와 방향성, 구체적인 목표수치의 제시

결론

❑ 내용면에서의 비교

명칭	한국 (국가물류기본계획)	일본 (신종합물류시책대강)
미래상	동북아시아	아시아 태평양 지역
Feed Back	5년	1년
실현 가능성	미지수 ?	목표수치를 넘어선 경우가 있슴
행정 일원화	유기적인 체계정비가 필요	대강의 기본개념

결론

❑ 금후의 과제

명칭	한국 (국가물류기본계획)	일본 (신종합물류시책대강)
미래상	편협적인 지역성을 배제한 아시아 지역 경제권의 진정한 물류 중심지 모색	
정보의 공개성	제한적 공개	일반공개
연구기반	현장실무인력의 양성 연구인력의 양성	공개입찰을 통한 공공 연구 프로젝트의 수행
개념정립	물류란 개별물류활동의 집합체가 아닌 전체로서의 체계이며, 단순한 물자의 흐름이 아닌 유기적인 활동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슴	

감사합니다!